

■ 부가세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

☰ **세무대리/납세관리** > **세무대리 공통** > **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**

* 과세기간(년/기) 년 >
 * 신고구분 예정 확정 * 사업자등록번호

사업자 기본사항	신고유형	일반	주업종코드	514961
	법인예정고지대상	N	간이부가율	
	관할서		상호	
	과세기간	20210701-20211231		



매출항목	공급가액(원)		세액(원)		매입항목	공급가액(원)		세액(원)	
전자세금계산서	10,		1,		전자세금계산서	9,6		9	
전자계산서	0				전자계산서	0			
신용카드 (부가세포함)	0				사업용신용카드	13		1,	
현금영수증	0		0		현금영수증	0		0	
					화물운전자복지카드	0		0	

※ 신용카드 매출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
공제항목	금액(원)		구분	제출대상여부	
예정고지세액 (일반)	978,000		부속서류 제출대상	현금매출명세서	N
예정신고미환급세액 (일반)	0			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	N
예정부과세액 (간이)	0				
예정신고세액 (간이)	0				
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	0				

구분	조회조건	조회내역
법인	예정	7 ~ 9월 내역조회
	확정	10 ~ 12월 내역조회
개인	확정	7 ~ 12월 내역조회

■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

		<h2 style="margin: 0;">보도자료</h2>			
보도 일시	2022. 1. 5.(수) 12:00	배포 일시	2022. 1. 5.(수) 11:00		
담당 부서	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	책임자	과장	강상식	(044-204-3201)
		담당자	사무관	강신웅	(044-204-3212)
<p>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-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62만 명,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-</p>					

1. 개인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

- (납부기한 연장)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,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.
- (직권 연장) 집합금지·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(62만 명)의 납부기한을 2개월(3.31.까지) 직권 연장합니다.

| 세정지원 대상(납부기한 직권 연장) |

<p>① 집합금지·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,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대상</p> <p>☞ '21.10.8.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'21.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기준 (개인사업자 60.4만 명)</p>
<p>② 인원·시설 제한 업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대상</p> <p>☞ '21.11.23. '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'에 따른 일상회복 특별용자 지원 대상 기준(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 피해를 겪은 개인사업자 1.6만명)</p>

-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'22.1.25(화)까지 해야 하며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문(모바일)을 발송(1.6)합니다. **[참고 4]**

세무대리/납세관리 > 세무대리 공통 > 안내문 조회

모바일 안내문 미리보기

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 (22. 3. 31.까지 납부)

코로나19 일상회복!
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.

납부기한 연장 안내

- ▶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이 큰 납세자에게 **적극적인 세정지원**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▶ 귀하는 **손실보상 또는 일상회복 특별용자 대상** 사업자에 해당되어, 이번 1월 부가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**2개월 연장(22. 3. 31.까지)**합니다.
- ▶ 다만 미리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'22. 1. 25.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.
- ▶ **납부기한만 연장된** 것으로 신고는 **1. 25.까지**하셔야 합니다.

손실보상 대상[집합금지·영업제한] 사업자

- ▶ 손실보상법(21.10.8. 시행)에 따른 '21.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사업자
- (중기부로부터 확인된 명단 기준)

일상회복 특별용자 대상[인원·시설운영 제한] 사업자

- ▶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(21.11.23.)에 따른 일상회복 특별용자 지원 대상 사업자
- (중기부로부터 확인된 명단 기준)

안내문종류

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...	모바일
부가가치세 세정지원 안내문	카드
부가가치세 개인 예정고지 ...	카드
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...	모바일

국세청등 (우편번호) 30128 찾아오시는
erved.

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업종 추가



보도 일시	2021. 12. 15.(수) 12:00	배포 일시	2021. 12. 15.(수) 10:00
담당 부서	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	책임자	과 장 반재훈 (044-204-3271)
		담당자	사무관 안주훈 (044-204-3287)

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- 2022. 1. 1.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-

- 국세청(청장 김대지)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, 중고가구,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을 안내해드립니다.
- 해당 업종 사업자(2021년도 12월 사업자 등록 기준 약 9만 명 해당)는 2022. 1. 1.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.

① 건강보조식품 소매업, ②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, ③ 벽지·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, ④ 중고가구 소매업, ⑤ 공구 소매업, ⑥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, ⑦ 자동차 세차업, ⑧ 모터사이클 수리업

- (발급의무)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.
 - (발급의무 위반 시)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%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,
 -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,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%를 포상금*으로 지급합니다.
- * 포상금 지급한도: (거래 건당) 50만 원, (연간 동일인) 200만 원

■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

[홈텍스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]

승인일자	카드사	가맹점 사업자번호	가맹점명	공급가액	세액	봉사 료	합계	가맹점유형	업태	업종	공제여부 결정	비고
2021-11-29	현대카드주식	339-01	크린워드	9,909	991	0	10,900	간이과세자	서비스	세탁중개업	공제	일반
2021-11-23	현대카드주식	339-01	크린워드	6,727	673	0	7,400	간이과세자	서비스	세탁중개업	공제	일반
2021-11-18	삼성카드주식	557-35	케리커피(KERRI CO	1,819	181	0	2,000	간이과세자	음식점	커피 전문점	불공제	간이
2021-11-18	비씨카드(주)	526-07	얼마백반집	20,910	2,090	0	23,000	간이과세자	음식	한식	불공제	간이
2021-11-08	현대카드주식	339-01	크린워드	7,091	709	0	7,800	간이과세자	서비스	세탁중개업	공제	일반
2021-10-31	신한카드 주식	466-25	픽미픽미 아이스크림	18,637	1,863	0	20,500	간이과세자	도매 및 소매업	과자, 식품, 아	불공제	간이
2021-10-27	비씨카드(주)	574-14	개인택시(부산37바2	6,600	0	0	6,600	간이과세자	운수	택시	불공제	간이
2021-10-24	삼성카드주식	771-33	사평커피	3,637	363	0	4,000	간이과세자	음식점업	커피 전문점	불공제	간이
2021-10-18	현대카드주식	339-01	크린워드	7,636	764	0	8,400	간이과세자	서비스	세탁중개업	공제	일반
2021-10-01	현대카드주식	339-01	크린워드	4,455	445	0	4,900	간이과세자	서비스	세탁중개업	공제	일반
2021-07-24	신한카드 주식	180-09	상델	3,182	318	0	3,500	간이과세자	음식점업	커피	불공제	선택불공제
2021-07-24	신한카드 주식	180-09	상델	1,819	181	0	2,000	간이과세자	음식점업	커피	불공제	선택불공제

[케리커피] 가맹점유형 : 간이과세자 / 비고 : 간이

● 사업자등록상태조회

사업자등록번호	사업자등록상태	조회기준일자
557-35-	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입니다.	2022-01-11

[크린워드] 가맹점유형 : 간이과세자 / 비고 : 일반

● 사업자등록상태조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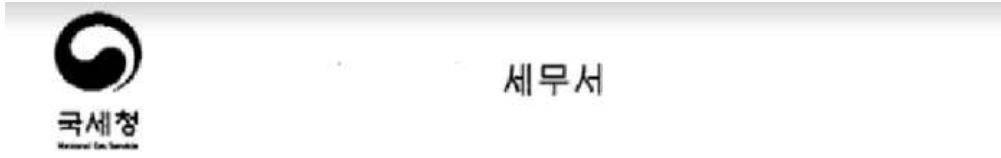
사업자등록번호	사업자등록상태	조회기준일자
339-01-	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(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) 입니다.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날짜는 2021년 07월 01일 입니다.	2022-01-11

[상델] 가맹점유형 : 간이과세자 / 비고 : 선택불공제

● 사업자등록상태조회

사업자등록번호	사업자등록상태	조회기준일자
180-09-	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(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) 입니다.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날짜는 2021년 07월 01일 입니다.	2022-01-11

■ 배달대행업종 매출신고시 유의사항



부가가치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

문서번호 :

- 상 호 : ○ 성 명 : 귀하
- 평소 국세청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.
- 우리 세무서에서 귀 사업장의 2020.1기 ~ 2020.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아래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알려드립니다.
- 2021.10.20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, 기한내 제출시 신속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처리기한일인 2021.12.01이후 7일 이내 발송해드립니다.
- ※ 검토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위 기한까지 부가가치세 및 관련세금(종합소득세, 법인세 등)을 수정신고·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고내용 검토결과 문제점

○ 귀 사업장의 신고내용과 배달대행업체로부터 배달대행료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분석을 통한 매출 과소신고 혐의금액

(단위:백만원)

①세금계산서 수취액	②1회당 배달료	③배달 횟수 (①+②)	④1회당 음식판매 가격	⑤추정 수입금액 (③×④)	⑥신고 수입금액	⑦과소신고 혐의금액 (⑤-⑥)
	3,500원					

- 제출할 해명자료
- 배달대행료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 결제내역 등

2021년 10월 일

세 무 서 장 (판 인 생 략)

(단위 : 백만원)

① 세금계산서 수취액	② 1회당 배달료	③ 배달횟수	④ 1회당 음식판매가격	⑤ 추정 수입금액
70,000	3,500원	20,000	26,000원	520,000

■ 2년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

2021년 세법해석 사례집

17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

답변요지

☑ 사전-2021-법령해석부가-0749, 2021.5.31.

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'20.1.1.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

사실관계

- ☑ 중소기업인 질의법인은 보유 중이던 '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'에 대하여 '21년 상반기에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고 '21.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예정임

질의내용

- 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을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시기

회신문

- ☑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기일이 2020.1.1.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

검토내용

- ☑ 법인령 §19의2①은 '20.2.11. 개정시 §9의2호'를 신설하여 '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'를 대손사유로 추가하며 그 시행시기를 '20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고

부가가치세 분야 ㉔

- 해당 사유는 법적 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사유가 발생(2년 이상 경과)하여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법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바
- 개정조항의 시행 전에 이미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'20.1.1. 이후에 손비로 계상하였다면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(서면-2021-법령해석법인-2501, 2020.10.26. 같은 뜻)

- ㉔ 그러나 부가법상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것이므로 '20.1.1. 전에 이미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'20.1.1. 이후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라도 부가법상 대손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
- '20.1.1. 이후에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

관련법령

- ㉔ 부가가치세법 제45조【대손세액의 공제특례】
- 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【대손세액 공제의 범위】
- 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